

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신용하 의원 외 12명

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용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. .

발 의 자 : 신용하·김근한·김영태·김정도
박세채·양진오·이명희·이상호
이정희·이지연·장세구·추은희
허민근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,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에 단서 규정 추가(안 제5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항

나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의회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행정사무감사는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<단서 신설>	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행정사무감사는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감사)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다.